



Press Release

## 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1. 18.  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
과 장 : 류 이 현  
사무관 : 박 은 엽  
전 화 : 500-1719  
쪽 수 : 2P  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0년 1월 1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내년부터 농지연금으로 노후걱정 없앤다

□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\*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\* 예상금액이며 향후 상품모형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※ 농지연금제도 :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, 고령농 사망시 그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는 제도

○ 또한,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\*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시 연금액 65만원/월 외에 벼를 경작할 경우 32만원/월, 임대할 경우 19만원/월 추가 수입

○ 즉,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활용한 추가 수입 확보에 제한이 있으나, 농지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.

□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,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,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m<sup>2</sup> 이하인 농업인이다.

○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.

○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.

□ 가입자(배우자)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,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회수하게 된다.

○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,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.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, 상품모형 설계·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'11년부터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참고>

① 농지연금 월 지급금(추정)

| 농지가격 | 추정 월지급금 | 농지가격 | 추정 월지급금 |
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1억원  | 325천원   | 3억원  | 975천원   |
| 2억원  | 650천원   | 4억원  | 1,031천원 |

\* 추정조건 : 대상자 70세, 농지가격 상승률 1.55% 가정

\* 동 금액은 추정치이며, **향후 농지연금 상품모형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**

② 논 1ha당 연간 수입 및 임차료(추정)

(단위 : 원)

|     | 순수익                      | 조수입        | 임차료율  | 임차료 <sup>1)</sup>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논 벼 | 3,836,850<br>(월 319,738) | 10,133,620 | 22.5% | 2,280,064<br>(월 190,005) |

<sup>1)</sup> 조수입 × 임차료율

\* 논의 공시지가 평균금액이 약 2만원/㎡인 점을 감안시 2억원짜리 논의 면적은 약 10,000㎡ (1ha)에 해당